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71,820천원으로서, 이중 5건에 1,566,57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u>계(5건)</u>	<u>1,566,573천원</u>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503,850천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0,000천원
○ 5.1.~5.2.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50,500천원
○ 7.9.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884,623천원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체처리	47,600천원 임.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202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71,820천원이며,
 - ▶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566,573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
 - ▶ 그 중 1,260,377천원이 지출되고, 17,08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89,109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 일반예비비로 지출은 없으며,
 -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5. 1~5.2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7.9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체처리” 등 총 5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 ▶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①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